

의안번호	2215281
의 퇴 인	김기현의원
회 답 일	2026.4.29.
추계번호	25D6969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등록 및 취소)	귀환 국군포로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	의무규정
2	안 제11조제3항 (위로지원금)	월지원금의 월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6조 (등록 및 취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제3항 (위로지원금)	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귀환한 국군포로를 품위 유지, 억류국 협조 여부 등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고 일시지원금과 월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

[표 1] 귀환 국군포로의 등급구분 및 월지원금 현황

등급	구분기준	월지원금	월지원금 (천원)
1등급	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	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	11,026
2등급	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	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	7,718
3등급	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	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	최고 6,616

주: 월지원금은 2026년 기준

자료: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3등급에 대한 월지급액은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함

-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억류국등(이하 “억류국등”이라 한다)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: 전체 억류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
- 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: 월지원금 월액(月額)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
-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: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
-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: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
-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: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

○ 현행법은 일시지원금을 월지원금 월액의 40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□ 2025년 기준 전체 귀환포로 80명 중 생존자 6명, 사망자 74명이며, 6명의 생존자 모두 3등급임

[표 2] 등급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2021		2022		2023		2024		2025		계
	생존자	사망자	생존자	사망자	생존자	사망자	생존자	사망자	생존자	사망자	
무등급	-	1	-	1	-	1	-	1	-	1	1
1등급	-	-	-	-	-	-	-	-	-	-	-
2등급	1	8	1	8	1	8	1	8		9	9
3등급	15	55	14	56	10	60	8	62	6	64	70
합계	16	64	15	65	11	69	9	71	6	74	80

주: 조창호 중위의 탈북·귀환은 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져 등급 미지정

자료: 국방부

- 개정안은 귀환 국군포로의 구분기준을 삭제하고 월지원금 수준을 1등급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월지원금 수혜대상자는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중 생존자는 2011년 기준 약 500명이고 2010년 국군포로 귀환(1명)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져, 현 시점에서 향후 국군포로의 귀환 인원 및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 - 현재 생존자 6인은 2013년 동법 제11조 위로지원금 등 관련 규정이 개정(법률 제11652호, 2013. 6. 23. 시행) 되기 전에 정착금(위로지원금 과거 명칭)을 일시금으로 모두 수령하였음¹⁾

1) 부칙 제11652호(2013.3.22.)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,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,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